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 세미나 개최

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일시_2016. 12. 14. (수) 13:00 ~ 16:00

장소_국회 의원회관 2층(210호), 제7간담회의장

주최_신보라의원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 세미나 개최

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일시_2016. 12. 14. (수) 13:00 ~ 16:00

장소_국회 의원회관 2층(210호), 제7간담회의장

주최_신보라의원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 세미나
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❶ **행사명** 청년 세미나
❷ **목 적** “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에 대한 발표 및 자유 토론 진행
❸ **일 시** 2016. 12. 14. (수) 13:00~16:00
❹ **장 소** 국회의원회관 2층(210호), 제7간담회의장
❺ **발 표** 김기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봉철(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신보라(새누리당 의원)
❻ **사 회** 최창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❼ **토 론** 강영배(대구한의대 교수)
채창균(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용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❽ **주 최** 신보라 의원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❾ **세부일정**

13:15-13:20(5')	▸ **개회사** **노 혁** 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20-13:25(5')	▸ **축 사** **신보라** 의원 (새누리당)
	〈발표 및 토론〉 사회 **최창욱** 실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30~13:55(25')	▸ **발표 1** **청년 기본법안 발의 내용** **신보라** 의원 (새누리당)
13:55~14:20(25')	▸ **발표 2** **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김기헌**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20~14:45(25')	▸ **발표 3** **청년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청년(정책)기본법안의 평가** **김봉철**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14:45~15:45(60')	▸ **토론** **강영배** 교수 (대구한의대) **채창균**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용환** 부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45-15:50(5')	▸ **정리 및 참석자 단체 기념촬영**

목 차

〈 발표 〉

1. **청년 기본법안 발의 내용** ····· 1
신보라 의원 (새누리당)

2. **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 19
김기헌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청년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청년(정책)기본법안의 평가** ····· 33
김봉철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 참고 〉

1. **청년기본법안** ····· 47
이원욱 의원

2. **청년정책기본법안** ····· 63
박홍근 의원

발표 1

청년기본법안 발의 내용

신 보 라
새누리당 의원

청년기본법안

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

발의연월일 : 2016. 5. 30.

발 의 자 : 신보라·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석창·권성동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종태·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박찬우·배덕광·백승주서청원·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상진·심재철엄용수·여상규·염동열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의동·유재중윤상직·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군현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우현·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정현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학재·이헌승이현재·이혜훈·임이자장석춘·전희경·정갑윤정병국·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운천·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원진·조훈현주광덕·지상욱·최경환(새)최교일·최연혜·추경호하태경·한선교·함진규홍문종·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122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을 비롯한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 선언(안 제5조).

라. 매년 8월을 청년의 달로 지정(안 제7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부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 지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아.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증진 및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의 능력계발, 사회참여의 촉진·확대, 문화 및 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법률 제 호

청년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사회 환경 마련
5.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청년의 자질 향상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지원”이란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리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참여확대, 문화·복지 증진, 고용 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거주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년에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의 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을 청년의 달로 한다.

제 2 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4.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
5.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6. 청년 인적자원 개발 방안
7. 청년 문제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8.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9. 그 밖에 청년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추진실적의 제출과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 실태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 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2조(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청년정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실무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청년특별회의)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년 정책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청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연구사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8조(청년의 참여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세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각종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외·부적응·무직자 청년 등 취약·위험계층에 있는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 선택의 다양한 가치관을 홍보하는 등 청년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상담 및 창업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능력개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능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 확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심리상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부적응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국제협력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국제적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청년 간의 교류와 연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청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5 장 청년단체 지원 등

제27조(청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지원 및 청년 권리실현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및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고용 확대, 창업 활성화, 능력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이하 “청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청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거주시설 : 거주공간이 없는 청년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청년 창업지원시설 : 청년에게 창업 및 새로운 직업·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청년 고용지원시설 :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그 밖에 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청년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청년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청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청년단체협의회) ① 청년단체는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청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청년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청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3. 청년 국제협력 활동의 지원
4. 청년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
5. 제31조에 따른 지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6. 그 밖에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청년단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청년단체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청년단체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청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청년단체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청년단체협의회의 운영 또는 청년단체협의회의 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⑦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⑧ 청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지역청년단체협의회) ① 특정 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년단체는 청년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역청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청년단체협의회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32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단체의 운영상황·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청년단체
2.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청년시설
3. 제3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청년단체협의회
4.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청년단체협의회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청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조세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와 지정받은 청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포상) ① 정부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년X자립 디딤돌,
청년기본법

국회의원 **신보라**

우리 **청년**은?

정부의 **청년정책**은?

2016년	2017년
• 정부는 **25개** 부처.청이 모두 **196개**의 일자리사업을 펴고 있음 • 올해 예산은 총 **15조8000억원** • 이 중 청년일자리는 **13개 부처**가 **57개 사업**을 시행 중 • 청년에 할당된 예산은 **2조1000억원**	• 내년 일자리 예산 **17조5000억원**은 역대 가장 많은 규모 • 몇 개 부처 몇 개 사업 보완 • 청년 일자리 예산은 15.4%인 **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

청년기본법 발의

“**청년**이 **성장**해야 **국가**가 **발전**한다”

– 청년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
– 청년 정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언하는 최초의 입법
– 청년이 누려야 할 권리의 보장과 시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통합중심지원 체계를 만듦

청년에 대한 기준 **확대** 도입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이 **생애주기별**로
겪을 수 있는 **취업, 결혼, 양육**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자립**을 실천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 높이기

약 10조원에 이르는 147개 청년 정책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음

기획재정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 총괄 조정 책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립

청년들의 **직접참여** 보장

- 매년 개최하는 범정부적 '**청년특별회의**' 청년당사자 참여 의무
- 청년의 일 · 자립 관련 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현황 국무총리 제출 및 공표 의무

청년지원 확대

청년거주시설, 청년창업지원시설,
청년고용지원시설 설치 운영

청년실태조사결과 국회 제출 의무화
청년단체 지원, 청년단체협의회 설치,
청년의 달 지정

청년X일자리X자립
= 청년기본법

발표 2

청년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김 기 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년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6.12.14

청년정책 부상, 그리고 청년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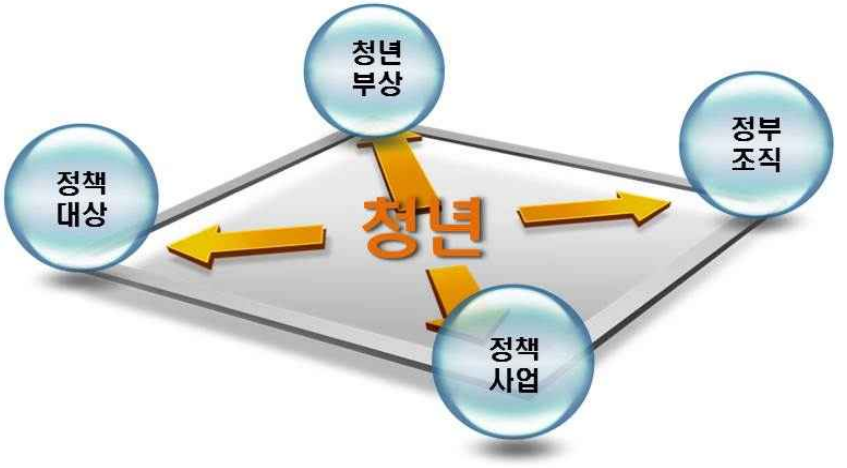

청년정책이 부상한 배경 – 청년 취업이 너무 어렵다

-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10% 이상 낮고 40% 초반으로 정부목표(70%)에 한참 미치지 못함.

- '15년-'16년 월별 청년 실업률은 1999년 1주에서 4주 기준 변경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최고 수치를 계속 갱신 중

<청년(15-29세) 고용률 변화 및 OECD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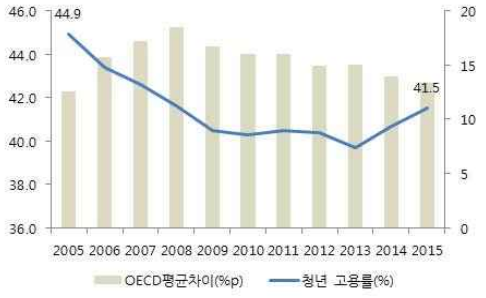

<청년(15-29세) 실업률 최근 추세 및 전년전월 비교>

자료: 통계청, 각 년도.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비교 청년연령은 15-24세임.

청년정책이 부상한 배경 – 취업에 이르는 길이 너무 길다

- 졸업/중퇴 이후 취업 경험자 비율은 '08년 90.7%에서 '16년 87.0%로 감소(한국 니트는 '13년 이후 공식집계 x)

- 졸업유예자가 늘고 첫 취업 소요기간은 11개월 내외로 길며, 근속기간은 같은 기간 2개월 감소

구분	2008.5	2009.5	2010.5	2011.5	2012.5	2013.5	2014.5	2015.5	2016.5
졸업.중퇴자 취업 경험 비중(%)	90.7	89.7	89.8	88.7	88.6	87.4	87.2	86.2	87.0
첫 취업 평균소요기간(개월)	11	11	10	11	11	11	12	11	11
첫 취업 평균근속기간(개월)[a]	17	17	16	16	16	15	15	15	15
4년제 대졸자 졸업 소요기간(년)	5.2	5.3	5.3	5.3	5.3	5.3	5.2	5.0	5.1
대졸자 휴학 경험 비중(%)	38.2	39.4	39.7	42.9	42.7	42.9	42.7	40.3	44.6

a. 첫 일자리에 계속 근무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임.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청년정책이 부상한 배경 – 취업을 해도 문제다

-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 장년층(100) 대비 청년층 상대임금은 지속적으로 감소

- 비정규직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추세이나 청년층은 증가추세

〈장년층(40-44세) 대비 청년층 상대임금(장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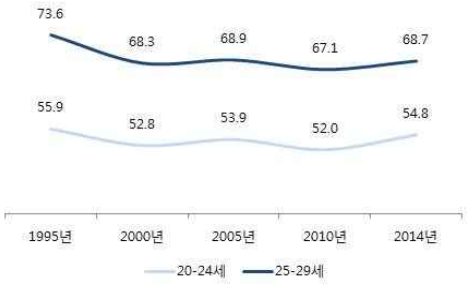

〈전체 및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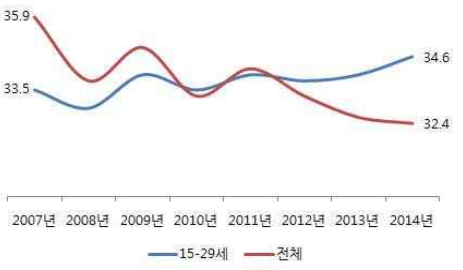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청년정책이 부상한 배경 – 청년 니트의 규모가 너무 크다

- 15세에서 29세 기준 한국의 니트는 18% 내외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줌

- 한국의 니트 비중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보다는 낮으나 미국, 일본과 북유럽 보다 높음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OECD
2008	18.5	7.4	14.6	14.8	14.0	11.6	8.7	9.9	16.4	19.2	16.2	13.7
2009	19.0	8.5	16.9	15.7	15.6	11.6	11.0	12.0	22.3	21.2	16.8	15.4
2010	19.2	9.9	16.1	15.9	16.6	12.0	10.3	12.6	23.3	23.0	18.3	15.7
2011	18.8	10.1	15.9	15.5	16.4	11.0	9.1	11.8	24.0	23.2	21.8	15.7
2012	18.5	9.4	15.2	16.3	16.6	9.9	9.7	11.9	25.3	24.6	27.0	15.4
2013	-	7.2	16.0	15.6	16.3	9.7	9.4	12.3	26.8	26.1	28.5	15.5
2014	-	6.6	15.0	14.4	16.3	9.2	9.4	13.0	27.7	25.9	28.3	-

* 일본은 15-29세가 아닌 15-19세 결과임. 15-19세 OECD 평균은 2008년은 7.9%, 2009년은 8.4%, 2010년 8.0%, 2011년 8.2%, 2012년 7.4%, 2013년 7.1%으로 OECD 평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자료: OECD(2016),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doi: 10.1787/72d1033a-en (Accessed on 5 January 2016)

청년정책이 부상한 이유 – 분가가 갈수록 줄고 늦어진다

- 우리나라 청년들의 분가 비중은 1997년 외환위기 전후로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섬.

- 60세 이상 가구주 동거 사유가 본인의 독립생활 분가인 경우는 줄고 자녀의 독립생활 불가인 경우는 늘어

〈청년 부모 분가 비중 추세(%)〉

연도	25-29세			30-34세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05년	40.1	33.3	47.7	69.8	62.9	76.5
2000년	49.2	38.7	59.2	75.9	70.8	80.9
1995년	55.3	44.3	65.9	78.6	75.1	82.1
1990년	57.4	46.4	67.9	76.6	73.8	79.5
1985년	56.6	45.8	66.9	74.7	72.2	77.3
1980년	55.9	45.0	66.3	73.3	70.8	75.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출처: 이병희 외(2010)

〈60세 이상 자녀 동거 독립생활 불가 이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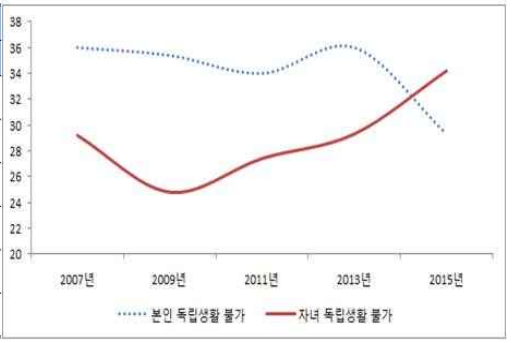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청년정책이 부상한 이유 – 삶에 대한 인식도 빨간 불이 켜졌다

- 청년의 삶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자주 생각한다"는 응답은 다른 국가들보다 높으나 낮아지는 추세임.

- 선택의 자유가 있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느냐에 대한 응답 역시 높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들어 낮아짐.

〈인생의 의미와 목적(자주 생각) 응답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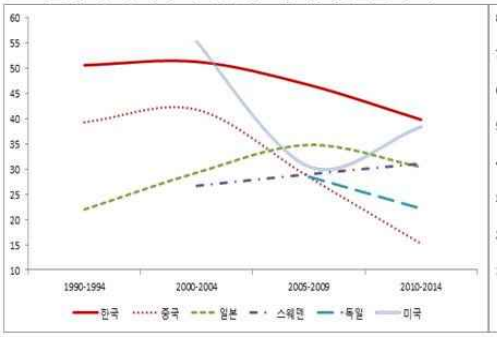

〈선택의 자유와 자신의 삶 통제(8점↑) 응답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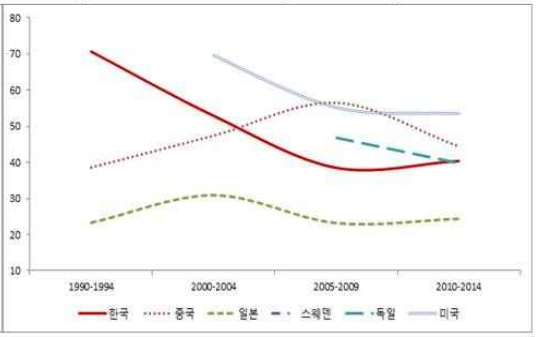

자료: http://www.worldvaluessurvey.org. 비교 대상 청년연령은 29세 이하임.

청년정책이 부상한 이유 – 삶에 대한 인식도 빨간 불이 켜졌다

- 한국 청년들이 자립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자녀의 중요한 자질로 자립을 선택한 비율을 통해 살펴봄.

- 이에 대해서 한국 청년들의 응답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며 최근 들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줌.

<자녀의 중요한 자질로 자립(independence)을 선택한 비율 국가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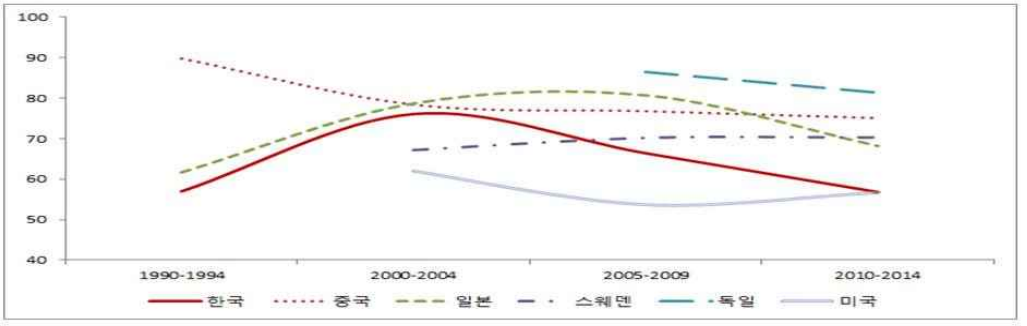

자료: http://www.worldvaluessurvey.org. 비교 대상 청년연령은 29세 이하임.

청년 관련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

- 박근혜 정부 들어서 6개에 이르는 정부합동 종합대책이 나올 정도로 정책적 대응 긴급하게 이루어짐.

- 2010년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1조원에서 2016년 2조원 이상으로 2배 증가

<청년층 고용지원 관련 주요 정부대책>

박근혜정부(2013-현재)
·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13.10)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대책('13.12)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14.4) · 청년 해외취업 촉진방안('14.12) · 청년 고용절벽 해소대책('15.8) ·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16.4)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 변화 추세(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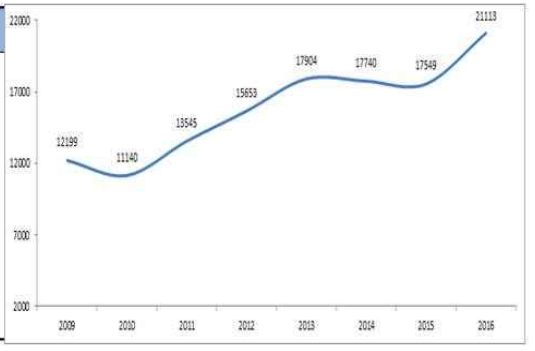

출처: 김기헌 외(2015). 2016년 대책 및 예산을 추가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 관련 정책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1. 지자체에서는 중앙부처보다 앞서 청년 전담부서 신설, 8개 시도 운영 중
2. 대구, 광주, 경기도 등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 중
3. 서울시에서는 2015년 서울형 청년보장이라는 지자체 증장기 계획발표
4. 서울시에 이어 대구시와 광주시에서 2016년 청년기본계획 발표 예정

시도별 청년 담당부서 신설 현황(2016년 7월 현재)

	실/국/본부	과/관/단	팀
서울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7명) 청년활동지원팀(4명) 청년공간지원팀(4명)
	일자리 노동국	일자리 정책과	청년일자리정책팀(4명)
부산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지원팀(4명)
대구	시민행복국	시민소통과	청년소통팀(4명)
광주	자치행정국	청년인재 육성과	청년정책팀(5명) 창의인성육성팀(4명)
강원	경제진흥국	일자리추진단	청년일자리팀(3명)
충북	행정국	청년지원과	청년정책팀(4명) 청년일자리팀(3명) 청년복지팀(3명)
전북	경제산업국	일자리 경제정책관	청년정책팀(5명)
경북	일자리 민생본부	청년취업과	청년취업정책팀(9명)

청년기본법안이 계속해서 입법 발의되고 있는 상황

19대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김상민의원 대표발의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청년 연령	19-40세 (제2조의 1)	19-39세 (제2조의 1)	19-34세 (제2조의 1)
정부 조직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
조정 기구	국무총리소속 청년정책조정회의	대통령소속 청년발전위원회	대통령소속 청년발전위원회

20대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청년 연령	19-39세 (제3조의 1)	19-34세 (제2조의 1)	19-39세 (제2조의 1)
정부 조직	기획재정부	국무총리	국무총리
조정 기구	국무총리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청년기본법 제정 이슈 1 연령정의의 문제

현행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규정 및 청년기본법 입법안 연령규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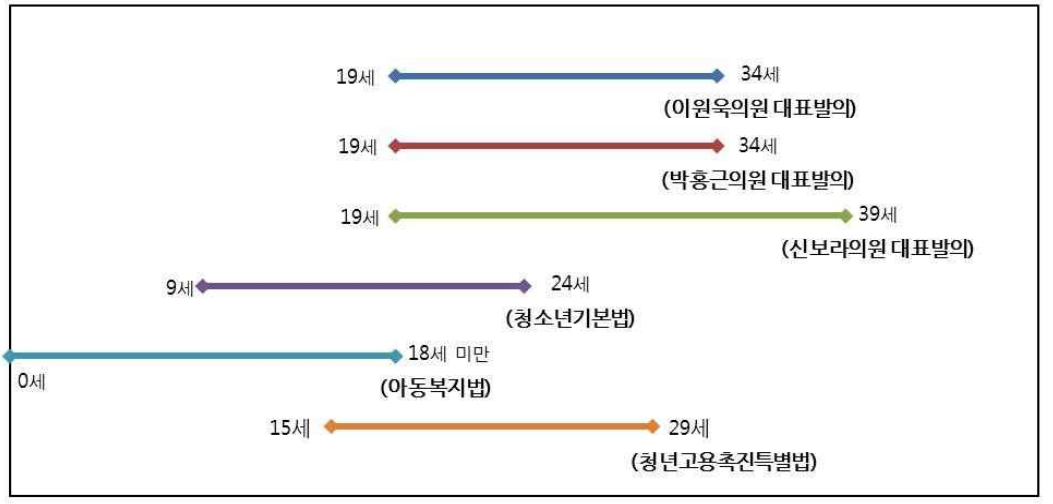

자료: 김기헌, 하형석, 신인철(2016) 청년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 (발간예정).

청년들이 응답한 연령은? 16년 설문조사 결과 19.3-29.5세

구분		사례수	아동		청소년		청년	
			하한 (평균)	상한 (평균)	하한 (평균)	상한 (평균)	하한 (평균)	상한 (평균)
전 체		2,534	5.2	11.5	12.6	18.4	19.3	29.5
성별	남자	1,315	5.2	11.6	12.7	18.4	19.4	29.7
	여자	1,219	5.2	11.5	12.6	18.4	19.3	29.3
연령	만15~18세	363	5.2	11.5	12.7	18.4	19.4	29.5
	만19~29세	1,073	5.2	11.4	12.5	18.4	19.4	29.2
	만30~39세	1,098	5.1	11.6	12.7	18.4	19.3	29.8
학력	중/고등학생	342	5.2	11.5	12.7	18.4	19.4	29.5
	대학생/대학원생	458	5.2	11.5	12.6	18.5	19.4	29.1
	고졸이하	799	5.2	11.6	12.7	18.3	19.2	29.1
	대졸이상	935	5.1	11.5	12.6	18.5	19.4	30.0

자료: 김기헌, 하형석, 신인철(2016) 청년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 (발간예정).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임.

전 세계 청(소)년 연령 규정은? 하한 15-19세, 상한 25-29세

전 세계 청(소)년(youth) 정책 하한 연령규정

상한 연령	국가들
0세 부터	14개국 - 미국, 핀란드, 일본, 독일 등
1-9세 이하	7개국 - 한국, 프랑스, 아이슬란드 등
10-14세 이하	48개국 – 영국,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등
15-20세 이하	111개국-아일랜드, 이탈리아, 덴마크 등
21세 이하	0개국

전 세계 청(소)년(youth) 정책 상한 연령규정

상한 연령	국가들
19세 이하	3개국 - 영국, 이스라엘, 미얀마
20-24세 이하	21개국 - 한국, 호주, 부탄, 네덜란드 등
25-29세 이하	62개국 –미국,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
30-34세 이하	48개국-일본, 프랑스, 스위스, 필리핀 등
35-39세 이하	43개국-이탈리아, 이집트, 싱가포르 등
40세 이상	3개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네팔
연령규정 없음	9개국-바레인, 리비아, 포르투갈 등

자료: youthpolicy.org

청년기본법 제정 이슈 2 생애주기접근의 문제

독일, 핀란드, 일본은 아동부터 청소년 , 청년 등 미래세대를 아울러서 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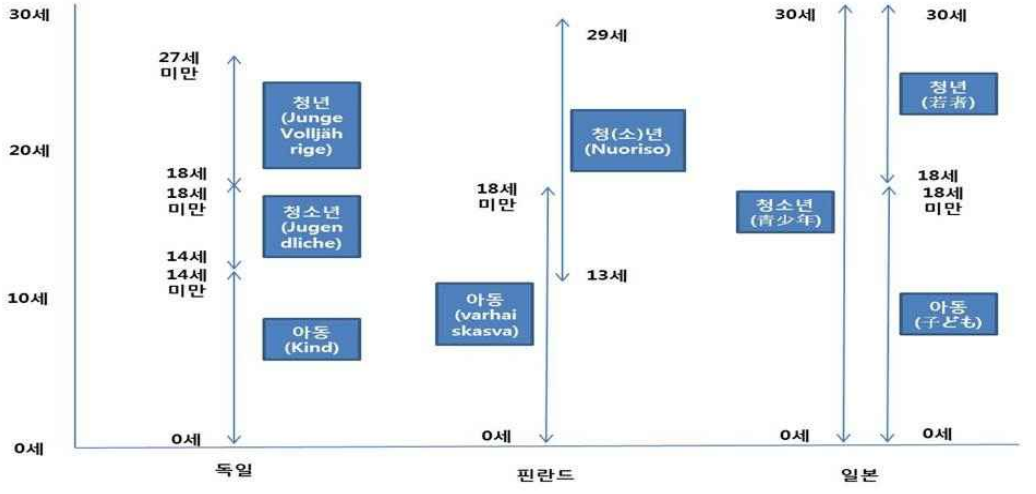

자료: 김기헌, 하형석, 신인철(2016). 청년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 (발간예정). [그림 IV-8], p. 162.

생애주기접근 제기 배경 – 사회적 연령과 균형 투자의 필요성

1. 정책대상 연령 규정은 생물학적인 연령(고정형) 아닌 사회적 연령(유동형)
2. 취업 지원을 받아야 할 젊은이는 19세 고졸자일수도, 29세 대학원졸업자일수도
3.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성인기 이행 전까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4.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을 별도 부처에서 다룰 경우 투자의 불균형, 중복 문제 발생

핀란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제시된 생애주기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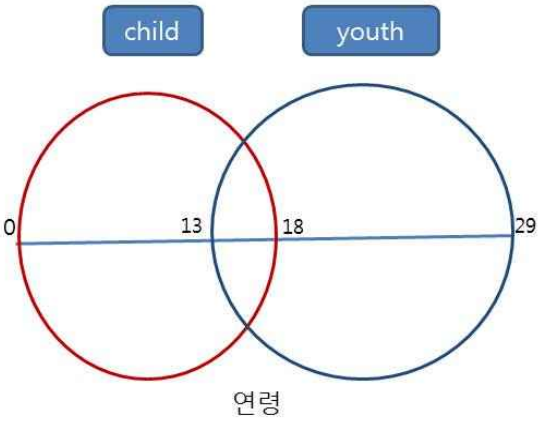

출처: 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2012)

청년기본법 제정 이슈3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청년정책 담당부처에 대한 의견(델파이조사, N=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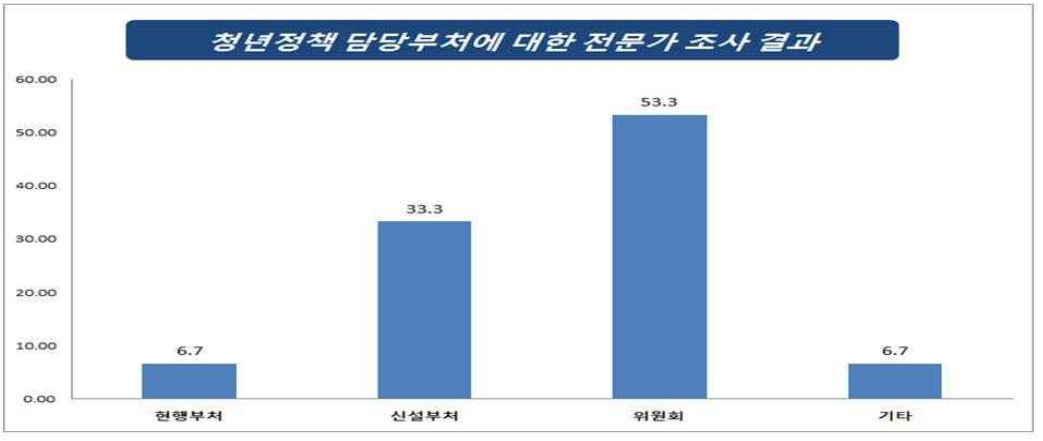

자료: 김기헌, 하형석, 신인철(2016). 청년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 (발간예정). [그림 V-19], p. 191.

전 세계 청(소)년 정부조직은? 행정위원회보다 부처 형태 다수

1. OECD 국가들 중에서 청소년과 청년 정책 담당 정부조직은 부처가 23개로 다수
2. 행정위원회 형태로 추진하는 곳은 6곳에 불과한 상황임
3. 현재 총괄조정기능을 갖는 조정기구가 별도로 있으므로 부처 담당이 적절해 보임
4. 생애주기 접근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산하 조정기구는 아동, 청소년, 청년 총괄 검토

OECD 국가 청(소)년(youth) 정책 정부조직 현황(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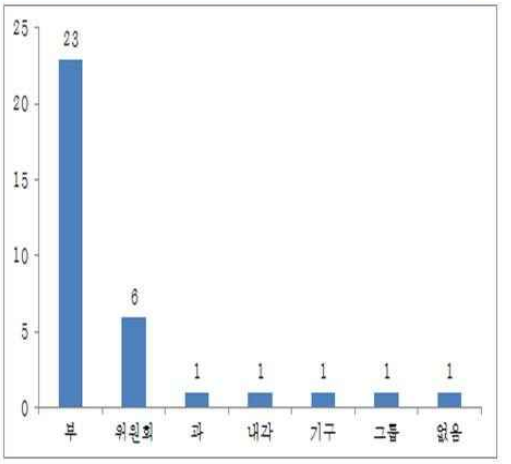

참고: 부(department), 위원회(council), 과(department), 내각(cabinet), 기구(institute), 그룹(group)
자료: youthpolicy.org

전 세계 청(소)년 주관 중앙부처 문화영역, 대상영역이 다수

구분		국가수	국가명
부처영역	단독	14	뉴질랜드,볼리비아,카보베르데,도미니카공화국,기니-코나크리,이집트,케냐,쿠웨이트,키르기스스탄,니카라과,나이지리아,시에라리온,남아프리카공화국,베네수엘라
	문화영역	68	프랑스, 이탈리아,싱가포르,알제리,앙골라,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바하마,바레인,방글라데시,바베이도스,벨기에(네덜란드공동체),벨기에(독일공동체), 보츠나와,브루나이,부룬디,카메룬,중앙아프리카공화국,차드,콩고-킨샤사,코스타리카,도미니카,적도기니,에타오피아,피지,감비아,조지아,가나,그레나다,기니비사우,가이아나,인도네시아,이란,이라크,자메이카,레바논,라이베리아,리비아,말레이사아,모리타니,몰도바,모잠비크,네팔,니제르,카타르,루마니아,세르비아,소말리아,남수단,수단,수리남,스와질란드,터키,우크라이나,예맨, 잠비아, 베냉, 불가리아,캄보디아, 아이티, 아이보리코스트, 몰디브, 나미비아, 파푸아뉴기니, 세인트키츠네비스,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바누아투
	교육영역	10	핀란드, 룩셈부르크,안도라,부르키나파소,콩고-브라자빌,토고, 안티과 바브다, 벨리즈, 모나코
	노동영역	6	오스트리아, 르완다, 세네갈, 스리랑카, 탄자니아, 짐바브웨
	대상영역	11	**대한민국**, 독일, 말리, 우간다, 알바니아,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에소토, 마다가스카, 상투메프린시페, 트리니다드&토바고

참고: 문화영역은 문화, 체육, 관광, 미디어, 종교가 포함된 경우이며 교육영역은 교육, 지역사회개발이 포함된 경우임. 노동영역은 노동, 고용, 경제, 정보기술 및 통신, 기술개발이 포함된 경우이고 대상영역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시민, 가족 등 대상 중심 정책이 포함된 경우임. 2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처 명에서 앞에 위치한 명칭으로 분류함. 기타로 분류가 불가능한 곳은 40개 국가(사회)임.
자료: youthpolicy.org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 표 3

청년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청년(정책)기본법안의 평가

김 봉 철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청년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청년(정책)기본법안의 평가

김 봉 철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I. 들어가며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사회구조적 문제로서의 청년문제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축소로 인하여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으며, 높은 주거비용과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청년들의 채무부담이 늘고, 청년삶의 질이 급속하게 하향하고 있다. 이는 더 나아가 미래의 중추세대가 되어야 할 청년들의 혼인 및 출산율의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청년문제는 단지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역동성과 국가지속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이 정책의 목표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청년지원을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 청년의 고용증진이라는 측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청년고용의 문제는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그 핵심적 추진정책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청년정책이 곧 청년고용정책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청년정책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문화·사회·복지등의 분야에서를 포괄하는 정책으로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지속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

법률은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한 법규범으로서 국가의 정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관련 정책의 예산부여의 근거를 형성한다. 현재 청년정책의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알고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그 부칙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다.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청년고용정책의 속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법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라는 점과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동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서 알 수 잇듯이, 청년정책의 일환으로서 청년고용정책추진법이 아닌 청년고용지표의 일시적 개선을 통한 경제안정화법 또는 경제활성화법에 가깝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청년정책은 중장기적인 정책의 관점에서 청년고용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청년의 참여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추진되어야 할 종합적인 정책이라는 인식하에 제19대 국회에서 뿐만 아니라, 제20대 국회에서도 현재 3건의 청년(정책)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선진외국의 입법사례를 바탕으로 청년(정책)기본법의 제정방향에 관해 알아보고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정책기본법안 및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에 관한 입법적 평가를 한다.

Ⅱ. 선진외국의 청년정책법

1. 독일의 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16년 11월 4일에 최종적으로 개정된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은 독일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에 관한 연방법이다. 이 법의 주무부는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다. 동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면 청소년을 14세 이상 18세미만의 자로, 청년을 18세이상 27세미만의 자로, 동항 제4호는 27세미만의 자(아동, 청소년, 청년)를 모두 포괄하여 젊은이(junger Mensch)로 정의하고 있다.

독일의 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청년은 자기 계발에 지원받을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동조 제3항 제1호는 청년지원이 청년이 개인적 및 사회적인 발달과 청년에 대한 불이익의 방지와 제거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동항 제4호는 청년지원이 청년들을 위한 긍정적인 생활조건을 유지하거나 조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청년지원은 청년일자리와 청년을 위한 지원과 후속관리가 그 중심에 있다. 청년지원과 관련하여 청년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 또는 민간지원을 선택하고, 지원형태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동법 제6조 제3항은 청년이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그 체류국으로부터 지원을 못받는 경우, 이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8조는 청년이 공적인 청

년지원과 관련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제1항)와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청소년·청년청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동법 제12조는 청년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는 청년의 직업교육과 사회교육적 지원 및 고용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오스트리아의 청소년·청년장려법

오스트리아에는 청년정책법으로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최근 2016년 12월 4일에 개정된 연방청소년·청년장려법(Bundesjugendförderungsgesetz)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률의 주무부는 오스트리아 연방가족·청소년부이다. 동법 제2조 제1항은 30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최근 2016년 12월 3일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지원법 제4조 제1호는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오스트리아의 청년정책법은 19세부터 30세까지의 자를 청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청소년·청년장려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무엇보다도 청년의 정신적·육체적·사회적·정치적·종교적·윤리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목적으로 청년의 사회교육과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동법은 총12조로 구성되어 있는 바, 특히 제1조에서는 동법의 목적, 제2조에서는 정의규정, 제3조에서는 청년고용의 원칙, 제4조는 정책의 수혜자, 제5조는 장려(금)의 방식, 제6조와 제7조는 각각 장려금수혜자의 일반적·특별 자격, 제8조는 장려지침, 제9조는 연방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3. 스위스의 아동·청소년·청년장려법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청년장려법은 연방내무부가 주무부이다. 이 법 제2조가 규정한 입법목적에 의하면 청년고용을 통한 청년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자기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 및 사회적·문화적·정치적 통합이 입법의 목적이다. 동법 제4조 제a호에 의하면 25세까지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년으로 보고 있다. 이 법률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제1장은 총칙으로서 규율대상과 목적 및 개념규정 등, 제2장은 민간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제3장은 연방주인 칸톤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4장은 자금과 재정지원에 대한 배분과 산정원칙, 제5장은 절차규정, 제6장은 연방정부와 연방주간의 협력과 연방에서의 정책조율 등, 제7장은 아동·청소년·청년문제위원회, 제8장은 최종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2조에 의하면 연방참사원은 아동·청소년·청년문제위원회를 구성하는 바(제1항), 이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경우에는 30세이하의 자가 적어도 3분의 1이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동법 제3조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청년문제를 심의하며(제a호), 젊은 세대의 상황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정책적 조치를 제시하며(제b호), 이 법이 아동·청소년·청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에 관해 심사를 행한다(제c호).

4. 소결

독일을 제외하고는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청년정책법은 주로 청년의 직업교육과 고용증진에 그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세 국가는 연방국가(Bundesstaat)로서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국가이다. 따라서 청년정책법은 실질적으로 국가성을 가지는 개별 연방주의 법률과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의 조례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오스트리아의 청소년·청년장려법 및 스위스의 아동·청소년·청년장려법은 연방의 일반법임과 동시에 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청소년정책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청년지원위원회(Jugendhilfeausschuss)가 청년정책의 의결기관으로, 청소년·청년청이 그 정책집행청으로서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

Ⅲ. 청년(정책)기본법의 제정방향

1. 법률의 형식으로서의 기본법의 법적 지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법령체계는 국가의 조직과 그 기능 및 국민의 기본권과 그 보장에 관한 최고법인 헌법을 바탕으로 개별 법률이 제정되고, 이 개별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통해 개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있다. 기본법이란 의회가 정립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중에서 기본법이라는 법률적 타이틀을 달고 있는 법률이다.

일반적으로 기본법의 내용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법은 국가의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명시하는 법률로서 국가의 정책형성과 실행에 대해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유도적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일반법률과는 달리 기본법의 목적, 기본이념, 그

리고 이에 따른 국가적 정책의 내용과 국가등의 책무 등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규정하는 골격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기본법의 내용은 대부분 프로그램적 규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대해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본법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기본법자체에 스스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 기본법에 기초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기본법은 헌법과 기본법과 관련된 개별법을 연결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법률형식이란 측면에서 일반의 법률과 동일한 위치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그 효력면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개별법률의 조문은 그 효력이 부인된다.

2. 기본법의 규율체계와 그 주요 내용 및 의미(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1966년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이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최초의 입법이다. 과거에는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률은 다소 예외적인 법현상으로 파악되었으나, 사회의 각 영역이 분화·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그만큼 다양한 정책영역에서의 법률적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한 정책을 규율하기 위한 여러 법률들간의 상호모순과 저촉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로서의 '기본법'의 제정은 필수불가결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률이 총67개가 있다. 이하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을 바탕으로 기본법의 규율체계와 그 주요 내용 및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의 규율체계와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법임을 규정

제2조(기본이념)-제1항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을 통한 청소년정책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청소년정책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의 추진방향(청소년의 참여 보장,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제시

제3조(정의)-이 법의 인적 적용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정의, 즉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외에 이 법에서 사용되는 기본용어(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 등)의 정의를 규정함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에서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청소년기본법의 타법률에 대한 적용상의 우선성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청소년기본법의 타법률에 대한 우월성을 규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과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청소년의 권리와 자치권은 구체적 권리가 아닌 선언적 권리이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 의하여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음

제6조(가정의 책임)과 제7조(사회의 책임)-국가외의 가정과 사회영역에서의 역할을 규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청소년정책과 그 입법을 매개하는 규정임

제 2 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정책의 총괄·조정부처로서의 여성가족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의무를 규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정책에 관한 심의·조정기관으로서의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그 소속성(제1항)과 주요업무(제2항) 및 그 구성(제3항과 제4항)을 규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위원회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의무를 규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의무와 계획의 주요 내용을 규정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여성가족부장관등의 기본계획의 하위 및 세부계획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무(제1항)

제 3 장 삭제<2008.2.29.>

제 4 장 청소년시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시설에 관한 법률(규정)에 관한 입법적 근거와 입법의무를 매개

제 5 장 청소년지도자

제20조~제27조는 청소년지도자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지도자자격의 적극적·소극적 요건 등)를 형성

제 6 장 청소년단체

제28조~제41조는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그 구성, 청소년단체에 관한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형성

제 7 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제2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입법적 근거와 입법의무를 형성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제4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근거와 입법의무를 형성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제4항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적 근거와 입법의무를 형성

제 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53~제56조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조성·사용 등에 관한 법적·예산적 근거를 형성

제 9 장 보 칙(제57~제63조의2)

제 10장 벌 칙(제64조~제66조)

3. 소결

청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청년(정책)기본법은 국가의 청년정책과 청년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명시하는 법률로서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형성과 그 실행에 대해 유도하는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년기본법에는 기본법의 목적과 그 기

본이념, 청년정책의 주요 내용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기본법은 그 자체로서 청년정책의 골격만을 규정할 뿐, 청년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기본법에 바탕을 둔 관련 청년정책법률들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따라서 청년기본법은 관련 법률의 제정근거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명문으로 관련 법률에 대한 우월성과 적용상의 우선성의 근거를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정책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하여 구체화되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주체와 실행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또한 청년정책의 주무부처와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주무부처와 타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Ⅳ. 청년(정책)기본법안의 주요 체계와 그 내용 및 평가

1. 청년(정책)기본법안의 주요 체계와 그 내용

(1) 2016년 5월 30일 신보라의원 대표발의안

이 청년기본법안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률안 제2조 제2항에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의 추진방향으로서 청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청년의 참여촉진, 청년에 대한 평등한 기회 제공, 청년을 위한 환경마련, 청년의 자질향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 적용대상으로서의 청년을 19세이상 39세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제3조 제1호), 제4조에서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하고 있다. 제6조는 청년정책의 일반법과 기본법으로서의 청년기본법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청년정책의 총괄·조정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을 명시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제8조 제1항), 이 기본계획이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하고 있다(제8조 제3항).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되는 청년단체협의회의 설립인가권을 가진다. 제9조

에 의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제1항),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동법안 제18조 이하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년의 참여확대(제18조), 고용지원(제19조), 주거지원(제20조), 창업지원(제21조), 문화활동지원(제22조), 능력개발지원(제23조), 심리상담지원(제2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2016년 8월 17일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안

이 청년정책기본법안은 제1조(목적)에서 동법의 목적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 고용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제1호), 제3조 제1항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문화·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활성화 등의 수립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청년정책의 일반법과 기본법으로서의 청년정책기본법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동조 제3항에 따라 이 계획은 국무총리소속 청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6조에 의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발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제2항). 청년정책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권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제7조 제1항).

동법안 제15조 이하는 청년정책의 기본시책으로서 청년의 참여확대(제15조), 능력개발(제16조), 복지증진(제17조), 고용촉진(제18조), 창업촉진(제1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안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2016년 8월 24일 이원욱의원 대표발의안

이 청년기본법안은 제1조(목적)에서 청년정책의 최종목적을 경제활성화와 이 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 동력확충을 내세우면서, 청년정책의 추진방향으로서 청년

의 능동적 삶의 실현 및 개개인의 자질 향상, 청년의 참여 촉진, 청년을 위한 경제·사회적 기반 조성과 경제·사회적 환경 마련, 청년에 대한 평등한 기회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동 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는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제4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일반법과 기본법으로서의 청년기본법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에서는 청년정책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화시키면서, 청년정책의 총괄·조정자로서의 국무총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제8조에 따라 청년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청년발전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1항),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3항). 또한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연구를 수행하고(제15조 제1항), 기본계획 및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행한다(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제2항에 따라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이하는 청년정책의 기본시책으로서 청년의 참여확대(제17조), 능력개발(제18조), 고용촉진(제19조), 창업지원(제20조)외에도 주거안정(제21조), 금융지원(제22조), 결혼·임신·출산·양육지원(제23조)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제19조 제4항에서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까지도 부담시키고 있다. 또한 제21조에서는 국가 등의 청년 신혼가구 및 1인가구를 위한 대책수립의무(제2항)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청년권리구제방안수립의무(제3항)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조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노력의무(제3항)와 제23조에서는 결혼 및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책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제1항에서는 청년생활지원금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2. 청년(정책)기본법안의 평가

세가지 법안 모두 청년정책의 목적, 추진방향, 정책총괄·조정주체, 청년정책의 주체로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청년정책의 기본 시책등을 기본적으로 규정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법안들은 청년기본법의 제정 후, 추진되어야 할 후속입법(법률, 법규명령, 조례 등)의 방향과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적 관점에서 청년정책기본법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이 기본법안들은 다른 법률과

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다른 청년정책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청년정책관련 법률과의 상호충돌을 피하고, 후속될 청년정책관련 법률의 구체적 입법에서의 기본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기본법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연령규정의 중복문제가 발생한다. 청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은 각각 청년과 청소년이라는 인적 적용대상이 다른 상호독립관계에 있는 기본법이다.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청년기본법안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신보라·이원욱의원 대표발의안)”,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박홍근의원 대표발의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연령의 상한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한 경우외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상호독립된 청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과의 관계처럼 인적 적용대상의 연령하한선이 상호중복되는 경우에는 입법체계상의 문제가 발생되어 관련법률과 정책의 실제 적용에서의 혼란이 야기된다.

물론 청년기본법에 후속하는 개별 청년정책 관련법률을 제정하여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중복을 피할 수도 있는 입법적 방안이 허용될 수도 있으나, 이는 기본법으로서의 청년기본법의 입법적 지위를 하향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입법체계성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과의 상호충돌을 피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요구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독일의 입법사례와 같이 청소년·청년기본법과 같은 통합 입법적 방안을 통해 연령중복뿐만 아니라 정책중복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와 현행법체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은 사회적 통념과 사회환경적 요소에 의하여 구별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정책관련 법률과 청년정책관련 법률의 내용도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다. 이러한 논거도 통합적인 차원에서의 청소년·청년기본법의 제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상 총괄·조정부처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한 부처상호간의 권한획정과 배분의 문제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청년기본법의 정책적 연관성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신보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에 의하면 청년정책의 총괄·조정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조직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한다. 따라서 청년의 참여·복지·고용·문화활동·능력개발·심리상담·주거안정·결혼·임신·출산·양육지원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지원으로서의 청년기본법안의 업무와 기획재정부의 사무관장범위와는 합치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박홍근·이원욱의원 대표발의안에 의하면 청년정책의 총괄·조정자로서 국무총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동법 제7조 제5항과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행정기관사무조정권과 정책조정권을 가진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행해져야 할 청년기본법안의 내용에 의하면 청년정책의 총괄·조정자로서 국무총리를 명시한 것은 종합성·체계성 확보를 통한 청년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정책의 총괄·조정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려될 수도 있다. 정부조직법 제41조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포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자이다. 청년정책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정책과의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청년정책의 총괄·조정부처로서 여성가족부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청년정책조정·심의기구를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로 설치하여 청년정책의 조정과 종합화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안이므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인 필요한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의 기반을 형성하는 청년세대는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을 비롯한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인식과 문제극복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청년(정책)기본법안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법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걸맞는 체계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청년기본법'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청년정책에 관련된 후속 법률과 법령 및 조례에 대한 모법으로서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청년기본법제정의 성과여부는 후속법률과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후속법률 등에 의해 구체적인 방식으로 청년정책의 추진방향과 그 내용이 확정되고, 청년기본법의 입법목적에 적합한 청년의 구체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1

청년기본법안

이 원 욱 의원 대표 발의

청년기본법안

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778

발의연월일 : 2016. 8. 24.

발 의 자 : 이원욱·전혜숙·박용진위성곤·이학영·권칠승민병두·김상희·김정우최명길 의원 (10인)

제안이유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경제·사회 등의 불안, 그리고 기술발전과 글로벌 기업화로 인한 고용 축소 등으로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높은 주택 가격과 학자금으로 주거난과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출산·양육 비용 등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 등을 포기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임.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은 비단 청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래의 노년 세대를 부양하는 경제 기반의 붕괴로 미래 세대와 국가에 막대한 노후 부양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급속히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각종 사회 문제로도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청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청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전국가적인 지원을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고용과 주거·부채 안정,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높이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청년문화 창조·육성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년의 권리 및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복지 등의 증진 및 청년 문화의 창조·육성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선언함(안 제6조).

라. 매년 중 1주간을 지정하여 청년주간으로 함(안 제7조).

마.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청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부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정당은 청년정치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장학 시책 및 학자금 지원·융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청년인재 및 저소득, 저학력, 무직자 등 취약청년의 취업 촉진 및 자립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청년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9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안정, 주거환경 개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및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 및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및 보육료·양육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문화의 특수성과 청년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며,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청년에 대한 복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4조).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창의적인 청년문화를 창조·육성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문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25조).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7조).

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 및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머.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6조).

법률 제 호

청년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복지 등의 증진 및 청년 문화의 창조·육성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 청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및 개개인의 자질 향상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청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기반 조성
4. 청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미래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 마련
5. 교육, 직업훈련, 취업·창업 등 청년의 자립 과정에서의 평등한 기회 제공
6. 건전한 청년문화의 육성과 활성화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능력을 개발하고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및 활동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 여건과 환경 등에서 청년에게 불리한 요인을 개선하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활동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청년정치교육”이란 청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청년문화”란 청년이 주도적으로 형성하였거나 청년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이 반영된 문화를 말한다.
7. “청년생활지원금”이란 이 법에 따라 청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8. “청년단체”란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9.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을 위하여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및 그 밖에 수행하는 소관 정책 수립 절차에 있어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창의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취업·창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결혼과 출산·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스스로 건전한 청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다른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의 창의력과 잠재력은 존중되어야 하며 나이의 연소함을 이유로 국가·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외부적 영향에 따라 기본권의 포기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⑤ 청년은 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거주지역·인종·종교·경제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⑥ 청년은 안정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능력과 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권리를 가진다.

⑦ 청년은 청년문화를 만들어나감에 있어 부당한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⑧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주간)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청년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청년주간(青年週間)으로 한다.

제 2 장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8조(청년발전지원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청년발전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4. 청년의 정치·사회참여 확대 방안
5. 청년의 능력개발 촉진 방안
6. 청년 고용·창업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대책
7. 주거·부채 등 청년 생활안정과 복지에 관한 대책
8. 청년의 결혼·임신·출산·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 및 지원 대책
9.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10.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11.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추진실적의 제출과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회단체 또는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회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청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체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기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5.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청년과 관련된 제도, 정책, 소통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⑩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청년정책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청년정책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관련 실태조사 등)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 및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청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청년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회단체 또는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년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청년정책의 기본시책

제17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각종 위원회의 청년 참여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현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정당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의 정치적 역량 개발과 정치에 대한 관심 확대를 위하여 청년정치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능력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 확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의 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의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장학 시책 및 학자금 지원·융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령과 성별·지역·학력 등에 있어 고르게 청년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진학 청년, 취업준비생, 고용불안 상태에 있는 청년 등의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고용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청년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청년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저학력, 무직자, 소외·부적응자, 재소자 및 외국인 유학생 등 취약·소외계층에 있는 청년(이하 “취약청년 등”이라 한다) 등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관·기업의 장 또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 미취업자 중 여성 및 장애인, 지역인재의 고용 비율은 따로 정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관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개선 등 청년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위반 기업과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위반 기업과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에는 근로감독관 등에 의한 상시 점검 및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기업과 사업주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창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주거안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등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청년 신혼가구 및 1인가구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기본법」에서 정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하여 권리구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금융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 및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업과 사업주는 청년의 결혼 및 임신·출산·양육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및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및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복지증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문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청년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 안전 등에 대하여 청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에 대한 복지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청년문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창의적인 청년문화를 창조·육성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제도와 요건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문화의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국제적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청년 간의 교류와 연대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청년 및 청년단체의 지원 등

제27조(청년생활지원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청년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취지와 청년정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청년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달리 정하거나, 대상별로 지급금액의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청년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청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보조의 범위 및 지원 절차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청년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청년시설과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청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청년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청년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청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9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2. 청년의 취업·창업 등의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화합,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의 제공
4. 부당고용, 성폭력 등의 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심리치료 등
5. 청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청년단체 또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조세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와 지정받은 청년시설·청년지원센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35조(포상) 정부는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청년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6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계획 및 그 추진 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8조제3항에 따른 장학 시책 및 학자금 지원·융자
2.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3.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업과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년 신혼가구 및 1인가구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
5. 제23조제3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및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
6. 제25조제3항에 따른 청년문화 단체·기관에 대한 지원
7.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년생활지원금 지급
8.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9.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청년시설 설치·운영 및 지정, 경비 지원
10.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2

청년정책기본법안

박 홍 근 의원 대표 발의

청년정책기본법안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620

발의연월일 : 2016. 8. 17.

발 의 자 : 박홍근·문미옥·송옥주
오제세·박 정·최명길
변재일·김해영·이재정
권미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 급변하는 사회정세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청년문제는 이미 개개인의 능력을 벗어난 국가적이고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청년층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안이므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인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 고용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년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등 각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 고용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무총리는 매년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발전에 미칠 영향 등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정책의 분석·평가에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등을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발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청년발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증진 및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청년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의 능력개발, 사회참여의 촉진·확대, 문화·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개발, 사회참여의 촉진·확대, 문화·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청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법률 제 호

청년정책기본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 고용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및 그 밖에 청년의 권익증진 등에 관하여 우리사회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참여확대, 문화·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활성화 등의 수립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청년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청년발전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발전에 관한 기본방향
2. 청년발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추진목표
   가. 청년의 능력개발
   나. 청년 복지의 증진
   다. 청년 고용의 촉진 및 창업 지원
   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청년의 참여확대
   마.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3. 청년발전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년발전에 관한 분야별 주요시책
5. 청년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③ 기본계획은 제12조에 따른 청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발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2조에 따른 청년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청년정책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청년정책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의 장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관련 문제의 조사 등) ① 국무총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청년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국무총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년발전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청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청년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사무국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청년발전위원회) ① 청년발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발전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청년의 날) 국가는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청년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제 3 장 청년정책의 기본시책

제15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각종 위원회의 청년 참여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능력개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능력·재능·기술을 개발하고 체력·인성·지성·사물에 대한 비판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복지증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문화, 교육, 주거, 결혼, 보육 등

에 대한 복지증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저학력, 소외·부적응자 및 약물중독자 등 취약·위험계층에 있는 청년(이하 “취약청년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복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고용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 등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창업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국제적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관련 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과 재외동포 청년 간의 교류와 연대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청년 및 청년단체의 지원 등

제22조(청년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수당(이하 “청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취지와 청년발전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청년수당 지급대상의 범위를 달리 정하거나, 대상별로 지급금액의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청년수당의 지급 절차·방법 등 지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청년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의 능력개발, 사회참여의 촉진확대, 문화·복지 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발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및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 개발, 사회참여의 촉진확대, 문화·복지 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청년 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청년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청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청년단체 또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조세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와 지정받은 청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 ① 정부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청년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청년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해마다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MEMO

MEMO

MEMO